

대구지방법원 2021. 9. 30 선고 2020나32581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

피고,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동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

담당변호사 이찬우, 임종규

변 론 종 결 2021. 8. 26.

판 결 선 고 2021. 9. 30.

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. 11. 25. 선고 2020가단11838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.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'2. 추가판단'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 부과 법적근거, 산출근거,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등에 관한 고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한다.

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,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2015. 8.경부터 2017. 8.경까지 사이 진행된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약 4억 원 이상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허가의 조건으로 여러 차례 논의되어 원고로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06,261,030원을 부과하면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첨부된 부과검토서와 고지서를 교부하였고, 고지서에는 개별법령의 규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,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2019년도 1년간의 1일 평균 상수도사용량은 13.1㎥에 불과하여 피고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오수발생량인 300㎥와 큰 차이가 있는데, 이 사건 고시 3. 산정방법의 나.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점 1층의 폐백실과 3층의 식당의 용도를 '부대급식시설'이 아닌 '일반음식점'으로 분류하여 실제 발생할 양보다 약 20배 많은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삼아

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한다.

앞에서 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,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전 1회 납부하는 것이고, 부과의 기준이 되는 오수발생량이란 건축물의 사용용도별 오수농도와 하수배출량을 근거로 결정되는 수치이지 건축물 등에서 실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을 근거로 결정되는 수치가 아니다. 또한 이 사건 고시에서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예측한 자료를 근거하여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실제 용도 등 오수량 및 오수농도의 증감요인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. 이 사건 예식장 1층의 폐백실과 3층의 식당은 상주인원 및 해당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이용인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는 시설이므로 그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오수발생량을 1㎡당 70ℓ로 보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이 사건 고시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, 달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처분금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진세리, 판사 김낙형, 판사 정석원